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1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5.1.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19.5.3.
- 다. 상정일자: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9.5.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징수과장 주명식】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감면율을 조정하고, 용어 및 조문 정리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 면제에서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 신설)
-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의 수수료 징수 종목의 명칭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으로 정비(안 별표 중 제1호)
- 3)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을 수수료 종목에서 삭제(안 별표 중 1호)

3. 검토보고(전문위원 조희옥)

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감면율을 조정하고, 수수료 종목 명칭 등을 변경·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으로는

1)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로 50% 내외에서 가감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구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0. (생략)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② (생략) <u><신설></u>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표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현황(기준: 2018년, 단위: 건/원)

전체		모범납세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794	27,835,200	392	313,600

※ 마포구 모범납세자 수: 6,927명(서울시 전체 223,021명)

2) 수수료 징수 종목의 명칭 정비(안 별표 중 제1호)

-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의 발급’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발급수수료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면제대상이므로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구분 없이 8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을 종목 명칭을 변경하여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3)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을 수수료 종목에서 삭제(안 별표 중 1호)

- ‘건축물관리대장 무한 증명’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으로 신설되면서 수수료가 삭제된 사항으로 규정에 맞게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상위법령 등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로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u>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u> (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p>			<p>[별표] <u>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u> (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p>		
종 목	단위	수수료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2) 건축물관리대 장 무한증명	1건	350원	2) 삭 제	삭제	삭제
3) (생 략)			3) (생 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